

#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이수루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3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8월 29일  
발 의 자: 아이수루 의원(1명)  
찬 성 자: 강동길, 경기문, 김규남,  
김기덕, 김영옥, 김용일,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형재, 도문열,  
문성호, 박강산, 박 석,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이상훈,  
이소라,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임종국, 정준호,  
정진술, 최민규, 최재란,  
홍국표, 황유정 의원(44명)

## 1. 제안이유

- 현재 관광취약계층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적용대상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음.
- 서울시는 관광취약계층 중 신체적 제약으로 여행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약자의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등의 ‘무장애 관광’ 정책을 시행 중임.
- 따라서 시민 관광복지를 확대하는 ‘무장애 관광’을 환경적, 정보적, 서비스 측면에서 양질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무장애 관광과 관광약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무장애 관광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첨부)

##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 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의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무장애 관광 지원) 시장은 관광약자의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li> <li>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li> <li>3.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li> </ol> <p>제5조의2(무장애 관광 지원) 시장은 관광약자의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